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종교사무조례) 이미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176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하였고, 현재 수정한 <종교사무조례>를 공포하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이극강 2017年 8月 26日

### 종교사무조례

2014년 11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6호 공포, 2017년 6월 14일 국무원 제 1276차 상무회의 수정 통과.

##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의 종교 신앙 자유를 위하고, 종교와 사회의 조화와 화목을 위하여, 종교사무관리 규범을 정하여, 종교사무 법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를 가진다.

(그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 혹은 불신앙 하도록 강요할 수 없고, 종교를 신앙하거나 불신앙하는 국민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가진 국민이나 불신앙의 국민, 서로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은 마땅히 서로 존중하고 화목해야 한다.

제3조. 종교사무관리는 합법적인 것은 보호하고, 불법적인 것은 제재하며, 극단적인 것은 통제하며, 침투하는 것을 막되 범죄를 타격(소탕)하는 것과 같은 원칙을 가진다.

제4조. 국가는 법에 의거한 정상적인 종교활동은 보호하고,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한다. 종교단체와 종교 학교,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를 가진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를 가진 국민은 헌법, 법률, 법규, 규정을 준수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행하고, 국가 통일을 지지하며, 민족 단결, 종교간 화목과 사회 화목을 도모한다.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종교를 통해 국가 안전을 위해 하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 국민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 국가 교육제도에 장애를 비롯하여 그 어떠한 국가 이익이나 사회 공공 이익과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 활동을 해쳐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서로 다른 종교 간에, 동일한 종교 내부 혹은 종교를 가진 국민과 종교를 가지지 않는 국민 사이에 모순과 충돌을 조장하거나, 선전, 지지, 종교 극단주의를 지원하는 일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단결을 파괴, 국가 분열, 테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각 종교는 독립적으로 자주, 자반(스스로를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단체, 종교 학교, 종교활동장소와 종교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종교단체, 종교 학교, 종교활동 장소, 종교 교직원은 서로 존중, 평등, 우호적인 기초하에 대외 왕래를 한다.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이 대외적으로 경제, 문화 등 합작(협력), 교류 활동을 할 때에는 부가적으로 종교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6조.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종교사무를 강화하고, 건전한 종교사무가 세워지도록 하며, 사무 역

량과 필요한 사무 조건을 보장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의 종교사무 행정을 진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타 부문은 각자 직책의 범위 내 법에 의거하여 관계된 행정 관리를 진행한다. 향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본 행정 구역의 종교사무관리 사무를 잘 하도록 한다.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인민정부 종교사무 관리를 협조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종교단체, 종교 학교, 종교활동장소와 종교를 가진 공민들의 의견을 듣고, 종교사무관리를 조정하여 종교단체, 종교 학교와 종교활동 장소에 공공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2장 종교단체

제7조. 종교단체의 성립, 변경과 취소는 마땅히 국가 사회단체 관리의 관계 규정에 따라登記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마땅히 국가 사회단체 관리의 관계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장정(규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종교단체는 아래의 직능을 가진다.

- (1) 인민정부가 법률, 법규, 규장과 정책을 집행하고 관철하는 것에 협조하고, 종교를 가진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 (2) 종교적인 사무를 지도하고, 규장(규칙) 제도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촉진한다.
- (3) 종교 문화를 연구하고, 종교 교의를 해석하며, 종교 사상을 세우고 발전시킨다.
- (4) 종교교육을 실행하고, 종교 교직원을 배양하며, 종교 교직원을 관리하고 인정한다.
- (5) 법률, 법규, 규장과 종교단체 장정과 기타 직능

제9조. 전국성의를 종교단체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는 본 종교의 필요에 따라 규정된 사람을 선발하고 파견하고, 종교 유학 인원을 받아들인다. 기타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인원을 선발하여 파견하거나 종교 유학 인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제10조. 종교 학교,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 교직원은 마땅히 종교단체가 제정한 규장 제도를 지켜야 한다.

## 제3장 종교 학교

제11조. 종교 학교는 전국성의를 종교단체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기타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라도 종교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제12조. 종교 학교 설립은, 전국성의를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하거나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설립하고자 하는 종교 학교의 소재지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마땅히 신청서가 도착한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의 심의를 받게 한다.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은 마땅히 전국성의를 종교단체의 신청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보내온 자료를 접수한지 60일 이내에 비준 혹은 불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3조. 종교 학교를 설립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 (1)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정관과 과목(과정) 설치에 관한 계획
- (2) 교육에 맞는 신입생 조건
- (3)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안정적인 경비 조달 근거
- (4) 학교의 임무와 학교 정관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의 준비
- (5) 전임 학교 책임자와 자격이 구비된 전임 교사 및 내부 관리조직
- (6) 합리적인 구성

제14조. 종교 학교 설립 허락을 받은 후 규정에 의해 법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종교 학교의 장소(주소) 변경, 학교명, 책임자 변경, 교육목표, 학제, 규정을 비롯하여 합병, 분교 및 폐교를 할 경우 본 규례 제12조 규정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종교학교는 특정한 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교사를 임용하고 학생의 학위를 제도를 구비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의 별도의 제정에 따른다.

제17조. 종교 학교에서 외국인을 교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마땅히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의 동의 후 소재지 외국인 사무관리 부문의 수속에 따른다.

제18조. 종교단체와 사원(절), 공관(도교사원), 모스크(이슬람사원), 교회당(이하 모두를 사관교당이라고 총칭한다)에서 필요한 교직 인원을 배양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종교교육과정은 마땅히 종교교육기관이 있는 시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의 심의를 받는다.

#### 제4장 종교활동 장소

제19조. 종교활동 장소는 사관교당과 기타 고정된 종교활동 장소를 일컫는다.

사관교당과 기타 고정 종교활동 장소의 구분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에 기록한다.

제20조. 종교활동 장소를 설립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갖춘다

- (1) 설립 취지는 본 조례의 제4조, 5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2) 현지 종교를 가진 국민의 평소 종교활동 모임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3) 본 종교활동은 종교 교직원 혹은 기타 본 종교 규정에 부합한 기타 인원에 의해서 진행된다.
- (4)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의 공급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 (5) 위치가 향촌 규정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고,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 종교활동 장소 설립 준비가 끝나면, 종교단체는 설립될 종교 장소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마땅히 신청서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의견을 취합하여,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한다.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 부분은 마땅히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이 보내온 자료를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허락 혹은 불허의 의견을 취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심의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무부문은 마땅히 시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서 보내온 자료를 30일 이내에 허락 혹은 불허의 결정을 한다. 종교활동 장소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종교활동 장소에 필요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 종교활동 장소 건설 완공 후, 소재지의 현급 이상 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登記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신청 접수한지 320일 이내에 종교활동 조직, 규장 제도, 건물 등 심의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종교활동 장소 등 모금>을 발급한다.

제23조. 종교활동 장소가 법적인 조건에 부합하고, 소재지 종교단체의 동의를 받은 후,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 심사 동의 후에, 민정 부문에서 법인登記를 할 수 있다.

제24조. 종교활동 장소의 폐쇄 혹은登記 내용을 변경할 경우, 마땅히 원래登記 관리한 기관에서登記 취소 혹은登記 변경 수속을 한다.

제25조. 종교활동 장소는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교활동 장소 관리 조직의 성원은 민주적으로 협의하여 선출해야 하며, 활동 장소를登記한 기관에 기록을 제시한다.

제26조. 종교활동 장소 마땅히 내부 관리를 강화하되,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규정에 따라 건전하게 인력, 재무, 회계, 치안, 소방, 문물보호, 위생 방역 관리를 위한 제도를 갖춘다. 또한 인민정부 유관 부문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는다.

제27조. 종교사무부문은 마땅히 종교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하고, 장소 관리 제도 집행과 설립의 상황,登記 항목 변경 상황을 비롯하여 종교활동과 대외 활동 상황을 감독 검사 받는다. 종교활동 장소는 마땅히 종교사무부문의 감독 검사를 받는다.

제28조. 종교활동 장소는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과 종교 출판물을 판매할 수 있다.

제29조. 종교활동 장소는 마땅히 본 장소에서 중대한 사고 혹은 위법적인 종교활동 금지 상황 등 종교를 가진 공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민족의 단결을 파괴,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혹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종교활동 장소는 마땅히 즉시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종교단체, 사관교당 등이 사관교당의 옥외에 종교 조상(조각품)을 세우려 할 때, 마땅히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에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문은 마땅히 신청 받은 지 30일 이내에 의견을 결집하여,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에서 심의하도록 보고한다.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은 마땅히 대형 조상을 세우거나 수리하려는 보고를 받은 지 60일 내에 허락 혹은 불허의 결정을 내린다.

종교단체, 사관교당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은 옥외 대형 종교 조상을 세울 수 없다. 사관교당 이외 지역에 대형 옥외 종교 조상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31조. 관련된 단위나 개인이 종교활동 장소 내에 상업 시설 설치, 진열 전람, 영화 및 연속극 촬영과 기타 활동을 할 경우, 마땅히 먼저 종교활동 장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 각 지방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실제 수요에 따라, 종교활동 장소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이용 총 계획과 도시 계획과 공정 건설, 문물 보호 등 법률과 법규에 따라야 한다.

제33조. 종교활동 장소 내에 보수 혹은 새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마땅히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무부문의 허락을 받은 후 법에 의거하여 계획대로 건설 등의 수속을 거쳐야 한다. 종교활동 장소 확장, 다른 지역에 증건할 경우, 마땅히 본 조례 제21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4조. 풍경구 내의 종교활동 장소에 대해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마땅히 협조하여 종교활동 장소와 풍경구 관리조직과 정원, 임업, 문물, 관광 등 방면에서 이익관계를 고려하되, 종교장소와 종교 교직원,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통해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한다. 종교활동 장소는 주요 관광 내용의 풍경구 계획 건설에 따른다. 마땅히 종교활동 장소의 외양,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한다.

제35조. 종교를 가진 공민이 상시적인 종교활동이 필요할 경우, 종교활동 장소 설립 신청을 구비하지 않았으면, 종교를 가진 공민 대표가 현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신청한다. 현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은 소재지 종교단체와 향급 인민정부 의견을 들은 후, 임시 활동 장소를 지정한다. 현급 인민정부 사무부문 지도하에, 소재지 향급 인민정부가 임시활동 지점에 대한 감독을 진행한다. 종교활동 장소 조건 구비 후에, 종교활동 장소 설립 허락과 등기수속을 한다. 임시 활동 장소의 종교활동은 마땅히 본 조례의 관련된 규정과 부합해야 한다.

### 제5장 종교 교직원

제36조. 종교교직원인은 종교단체의 인정을 거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기록하고, 그때부터 종교사무 활동을 할 수 있다. 장족 불교의 살아 있는 부처(활불)의 계승은 불교 단체의 지도하에 종교 규례와 역사가 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성급 이상 인민정부 사무부문 혹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가 허락한다. 천주교의 주교는 천주교의 전국성의 종교단체가 국무원 종교사무부문에 보고 기록한다. 자격을 얻지 못하였거나 자격을 상실한 종교 교직원인은 종교 교직원인의 신분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37조. 종교 교직원인이 일을 맡거나 떠날 때, 종교활동 장소 주요 교직원이 본 종교의 종교단체 동의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보고한다.

제38조. 종교교직 인원이 종교활동을 주재하고, 종교 의식을 거행하되, 종교의 서책을 정리하고, 문화 연구를 진행하며, 공익 자선 활동을 전개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9조. 종교 교직원인은 법에 의거하여 사회가 보장하는 각종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마땅히 규정에 의거하여 종교 교직원인을 사회보험에 등기해야 한다.

## 제6장 종교활동

제40조. 종교를 가진 공민이 종교활동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마땅히 종교활동 장소 내에서 거행해야 한다. 종교활동 장소, 종교단체 혹은 종교학교 조직, 종교교직 인원 혹은 본 종교규정에 부합한 인물이 주제를 하되 교의와 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41조.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 활동장소, 비지정된 임시활동 장소는 조직, 종교활동 거행, 종교적인 모금(헌금)을 받을 수 없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 활동장소는 종교교육 훈련을 할 수 없으며, 공민으로 하여금 출국하여 종교 방면의 교육, 회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다.

제42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역을 넘어 종교활동 장소가 용납할 수 없는 규모의 대형 종교활동, 혹은 종교활동 장소 외에 거행되는 대형 종교활동은, 마땅히 주최하는 종교단체, 사관교당이 행사가 진행되기 30일 전에, 대형 종교활동이 거행될 지역의 시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신청한다. 해당 시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은 마땅히 15일 이내에 처리하되, 본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허락 혹은 불허를 결정한다. 허락이 될 경우 허락 기관은 성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대형 종교활동은 마땅히 통지서에 기록된 요구대로 종교 의식을 진행하되 본 조례 제4조,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주최하는 종교단체, 사관교당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며, 대형 종교활동 안전을 보증하고 질서 있게 진행한다. 대형 종교활동이 거행되는 현지 향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마땅히 각자 해당되는 직책에 따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관리와 지도를 한다.

제43조. 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중국 공민이 해외 성지 순례를 할 경우 이슬람 전국성의 종교단체 조직이 책임 진다.

제44조. 종교학교 이외의 학교 내지 기타 교육기구에서 전도를 하거나, 종교활동 거행, 종교조직 설립, 종교활동 장소 설립은 금지한다.

제45조. 종교단체, 종교학교와 사관교당은 국가 관련 규정을 편집하고 인쇄하여 종교 내부 자료성의 출판물에 보낼 수 있다. 공개로 발행된 종교 출판물은 국가 출판 관리규정을 지킨다. 종교 내용의 출판물은 마땅히 국가 출판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

- (1)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의 화목을 파괴
- (2) 서로 다른 종교 간의 화목과 종교 내부의 화목 파괴
- (3)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은 공민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내용
- (4) 종교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내용
- (5) 종교의 독립 자주, 자반(운영) 원칙을 위배

제46조. 개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종교적 출판물 혹은 인쇄물을 반입하거나, 혹은 기타 방식으로 종교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수입할 경우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종교 소식을 전할 SNS를 제공할 경우, 마땅히 성급 이상 심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국

가 SNS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48조. SNS를 통해 종교 소식을 전하고자 할 경우 내용은 마땅히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종교 사무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SNS를 통해 전할 종교 소식은 본 조례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 제7장 종교 재산

제49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가 법에 의하여 점유한 국가 소속의 재산, 단체 소유의 재산은 법률과 국가 관련 규정 관리와 사용에 따라야 한다. 기타 합법적인 재산은 소유권 혹은 기타 재산권리에 따른다.

제50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가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소유 혹은 사용하는 주택, 주택물, 시설 등은 기타 합법적인 재산, 수익 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종교단체, 종교 학교, 종교활동 장소의 합법적인 재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 등이 점유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문물에 대해, 강제로 점유하거나, 강탈, 사유, 파괴 혹은 봉인, 압류, 동결, 몰수, 처분할 수 없다.

제51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가 소유한 주택과 사용하는 토지의 부동산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등기 기구에 부동산 등기 신청하여 부동산권 증서를 수령한다. 소유권에 변경이 있거나 이전할 경우 마땅히 절차에 따라 등기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 토지 사용권의 변경 혹은 이전 시, 부동산 등기 기구는 마땅히 본급 인민정부 사무부문의 의견을 구한다.

제52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비영리조직으로 재산과 수입은 마땅히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거나 공익 자선사업에 쓰되, 분배할 수 없다.

제53조. 어떤 조직 혹은 개인이 모금(헌금)을 통해 지은 종교활동 장소에 대해서 종교활동 장소의 소유권, 사용권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다. 투자 혹은 위탁 경영을 할 수 없으며, 종교활동 장소 혹은 대형 옥외 종교 조상(彫像)을 통해 종교 명의로 상업 선전할 수 없다.

제54조. 종교활동 장소로 사용되는 종교활동의 주택, 건축물 혹은 부속된 종교교직 인원이 생활하는 주택을 이전, 담보, 실물 투자할 수 없다.

제55조. 공공 이익의 필요를 위하여 종교단체, 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 장소 건물에 징수해야 할 경우, 마땅히 국가 건물 징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 장소는 돈으로 보상을 받거나, 다른 건물로 교환 혹은 중건할 수 있다.

제56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 종교 교직원원은 법에 의거하여 공익 자선사업을 할 수 있다. 어떤 조직 혹은 개인도 공익 자선활동을 이용하여 포교할 수 없다.

제57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모금(헌금) 받을 수 있으나 취지에 부합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해외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부대 조건의 모금을 받을 수 없고, 금액이 10만위엔(약 1,700만원) 초과할 경우 마땅히 현금 이상 인민정부 사무부문에 보고하여 허락 받는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종교 습관(관습)에 따라 공민으로부터 모금을 할 수 있으나, 강제적이거나 할당(모금)할 수 없다.

제58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 마땅히 국가 통일의 재무, 자산, 회계 제도에 따르며, 소재지 현금 이상 인민정부에 재무 상황, 수입지출 현황과, 모금 사용 상황을 포함하여 기타 감독 관리를 받아들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종료를 가진 공민에게 알린다. 종교사무 부문은 마땅히 관련된 부문과 내용을 공유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재무회계 제도에 의거하여 건전한 회계 체재를 갖추고 재무 보고, 재무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건전한 재무관리 기구를 세우고, 재무 회계 인원을 준비하며 재무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 관련 부문은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에 대한 재무, 자산 검사와 평가를 위한 조직을 세울 수 있다.

제59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는 마땅히 법에 의거한 세무 등기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교직 인원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납세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 세수 혜택을 받는다. 세무 부문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교직 인원에 대한 세수 관리를 실시한다.

제60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 취소 혹은 폐쇄 시, 마땅히 재산을 청산하고 청산 후에 남은 재산은 마땅히 종교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에 사용한다.

## 제8장 법률 책임

제61조. 국가 공무원이 종교 사무관리 업무를 하는 중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소홀히 하는 것,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은 법에 의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한다.

제62조. 강제로 공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혹은 신앙하지 못하게 함,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면, 종교 사무부문은 책임지고 개선한다. 치안을 위반한 관리 행위가 있으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와 종교를 신앙하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있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해 형사 처벌한다.

제63조. 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돕거나 종교를 이용해 국가 안전과 공공 안전을 위해하는 경우,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와 분열과 테러 활동, 공민의 인권과 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회 질서에 방해가 되는 경우, 공공의 재산 혹은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위법 활동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관련 부문에서 행정 처벌을 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손해를 끼쳤으면 법에 의해 민사 책임을 진다.

종교단체, 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 장소에서 전횡, 사안이 심각하면 관련 부문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돈한다. 만일 정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등기 관리기구 혹은 기관 설립 허락기관에서 법에 의거하여 등기증서 혹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제64조. 대형 종교활동 과정 중 국가 안전, 공공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등이 발견되면, 관련 부문에서는 법률과 법규에 의하여 조치 혹은 처벌한다. 종교단체, 사관교당이 주관하여 책임이 있다면, 등기관리 기구에서는 책임자를 교체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등기관리 기구는 등기증서를 취소한다.

해당되는 대형 종교활동은 종교 사무부문이 유관 부문의 책임하에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을 위반하여 획득한 불법적인 재물은 몰수한다. 그 중에 대형 종교활동이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에서 주관한 것이면 등기관리기관에서 해당 종교단체, 종교활동 장소의 책임자를 직접 교체할 수 있다.

제65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가 아래에 열거한 것 중에 속한다면 종교사무 관리책임 하에 개선한다. 상황이 비교적 심각하면 등기 관리기관 혹은 설립을 허락한 기관에서 해당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의 책임자를 직접 교체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하면 등기 관리기관 혹은 설립 허락기관에서는 일상 활동 정지, 관리조직 개선, 한시적인 정리 기간을 제시한다. 이를 거절하면 법에 의해 등기증서 혹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위법, 불법적인 재물은 몰수한다.

- (1) 규정에 따르지 않고 등기를 변경하거나 수속한 경우
- (2) 종교학교가 교육 목표와 정관과 과정(학과)설치 요구를 위반한 경우
- (3) 종교활동 장소가 본 조례 제26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제도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제도가 요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4) 종교활동 장소가 본 조례 제54조 규정을 위반, 종교활동의 주택과 건축물 및 부속의 종교교직원 생활 주택을 이전, 담보 혹은 실물 투자한 경우
- (5) 종교활동 장소 내에서 중대한 사고 및 사안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거나 심각한 결과가 있는 경우
- (6) 본 조례 제5조 규정을 위반, 종교의 독립 자주, 자반(운영) 원칙을 위배
- (7)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국내외에서 모금 받았을 경우
- (8) 행정 관계기관의 법에 따른 감독 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제66조. 임시활동 장소의 활동에서 본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종교 사무부문의 책임하에 개선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활동을 정지하고, 임시 활동 장소를 폐쇄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제67조. 종교단체, 종교학교, 종교활동 장소가 국가의 관련된 재무, 회계, 자산, 세수 관리규정을 위반하면, 재정, 세무 등 부문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재정, 세무 부문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등기 관리기관 혹은 설립 허락기관에서 등기증서 혹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

제68조. 종교 내용의 출판물 혹은 SNS를 통한 종교 내용 전달의 경우 본 조례 제45조 제2항의 금지 내용을 한 경우, 관련 부문에서 해당 기관이나 인원에 대해 법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한다. 임의로 SNS에서 종교 내용을 전달하거나 허락된 내용을 초과하였으면 관련 부문에서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69조. 임의로 종교활동 장소 설립, 이미 등기가 취소된 종교활동 장소에서 종교활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설립한 종교학교에 대해서 종교 사무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조처할 수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한다.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5만원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을 위반한 주택, 건축물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 관리를 위반한 행위는 치안 관리법에 의해 처벌한다.

비종교단체, 비종교학교, 비종교활동 장소, 비지정의 임시활동 장소의 조직, 종교활동 거행, 종교적 모금(헌금)을 받은 경우에, 종교 사무부문은公安, 민정, 건설, 교육, 문화, 여행, 문물 등 관련 부문의 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불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하며,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함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5만원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70조. 임의로 공민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종교 방면의 훈련, 회의, 성지 순례 등 활동이 있거나, 혹은 임의로 종교교육 훈련을 개설한 경우에 종교 사무부문에서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2만원엔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거 형사 책임을 묻는다.

종교 학교 이외의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에서 전도, 종교활동 거행, 종교조직 구성, 종교활동 장소의 설립의 경우 허락한 기관 혹은 기타 관련 부문에서 책임을 물어 기한 내에 개선하도록 경고한다. 불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학생 모집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71조. 종교활동을 제공하는 조건이 위법일 경우 종교 사무부문은 경고하고, 불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2만원엔 이상 20만원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인 주택, 건축물은 계획, 건설 등 부문에서 법에 의거 처리한다. 치안 관리 위법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72조. 본 조례 규정 대형 옥외종교 조상의 설치에 관해 위법하였을 경우, 종교 사무부문은 국토, 계획, 건설, 관광 등 부문에서 시공을 정지하거나, 기한 내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불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조상 설치 공정비용의 5% ~ 100%의 벌금을 부과한다.

종교활동 장소 혹은 대 옥외 종교 조상의 투자 및 임대 경영이 있으면, 종교 사무부문은 공상, 계획, 건설 등 부문에서 개선을 명령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등기 관리기관이 본 종교 활동 장소의 등기증서를 취소하고, 법에 의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제73조. 종교 교직원원이 아래의 항에 속하면, 종교 사무부문은 경고하고 불법과 비법으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한다. 상황이 엄중하면 종교 사무부문은 관련 종교단체, 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 장소에 게 잠시 종교사무 활동을 중지하거나 종교 교직원원 신분을 취소할 수 있다. 동시에 관련된 기관이 종교단체, 종교학교 혹은 종교활동 장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치안 관리를 위법하였으면 법에

의해 치안 관리 처벌을 받는다. 범죄의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 (1) 극단주의를 선전, 지지 도움을 주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국가 분열과 테러 활동을 진행 혹은 참여하거나 관련 활동을 한 경우
- (2) 해외 세력의 지배를 받아 임의로 해외 종교단체, 혹은 기구가 위임한 교직을 맡은 경우, 기타 종교의 독립 자주 자반(운영)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 (3) 국가가 규정한 국내외 모금(기증)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4) 허락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 장소 외에서 종교활동을 주최하거나 조직할 경우
- (5) 기타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한 행위 .

제74조. 종교 교직인원을 가장하여 돈을 갈취(사기)할 목적으로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한 경우, 종교 사무부문을 활동을 정지시킨다. 불법이나 비합법적으로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한다. 동시에 1만원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의해 처벌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75조. 종교 사무부문의 행정 행위에 불복할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 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9장 부칙

제76조. 내지(중국 내)와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지구와의 종교 왕래는 법률, 행정 법규, 국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제77조. 본 조례는 2018年 2月 1일부터 시행한다.